

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

의안 번호	38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8. .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'98.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'98년도분 시세(주민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, 자동차세, 사업소세)를 감면 하고자 본 안을 제출함.

□ 주요내용

-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·물적 피해를 입은자 및 그 직계가족에게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사망피해 가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(토지분)과세면제, 수해로 인하여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 자동차세 과세면제

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

□ 과세면제에 관한 법적근거

- 지방세법 제9조의2(천재등으로 인한 감면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·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□ 과세면제 대상 및 면제 세목

- '98.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자에 대해 시
세충 주민세 · 종합토지세 · 도시계획세 · 사업소세 · 자동차세의
과세면제

면 제 세 목	면 제 대 상
'98 균등할주민세	- 수해로 인해 인적·물적 피해를 입은자
'98 종합토지세	- 수해로 인한 사망피해 가족 - 건축물의 유실·전파·반파 피해자 - 농경지 유실·매몰 피해자 - 농가의 가축 피해자 - 수해피해 사업장
'98 토지분도시계획세	- 수해로 인한 사망피해 가족 - 건축물 유실·전파·반파 피해자 - 수해피해 사업장
'98. 8월 ~ 12월분 종업원할 사업소세	- 수해피해 사업장
'98. 2기분 자동차세	- 수해로 인해 폐차된 차량 소유자

□ 과세면제 세부내역

- ① 인명피해(사망 및 2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)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사망피해 가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(토지분)과세면제
- ②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입은자(그 건축물의 세입자를 포함한다)에 대한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그 건축물이 유실·전파·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(토지분)과세면제
- ③ 축사·비닐하우스에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
- ④ 농경지(전·답)에 침·관수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유실·매몰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와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
- ⑤ 가축의 폐사·유실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농지법시행령 제3조(농업인의 범위)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축 2두, 중가축 10두, 소가축 100두, 가금 1,000수이상의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육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
- ⑥ 사업장이 수해로 인하여 훼손(건축물의 경우 반파이상, 건축물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 훼손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때를 말한다)된 경우 주민세(균등할)·사업소세('98. 8월분부터 '98. 12월분까지의 종업원할)·종합토지세 및 토지분도시계획세(반파이상 건축물의 부속토지, 건축물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 훼손시설물의 부속토지 또는 부속토지의 유실·매몰면적)과세면제
- ⑦ 어선·어망·어구등이 유실·파손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
- ⑧ 자동차·건설기계등이 수해로 침수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(균등할)과세면제, 그 자동차·건설기계등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말소등록 하는 경우 자동차세('98. 2기분)과세면제

호 우 피 해 현 황

☐ 인명 피해

(단위 : 명)

계	사 망	실 종	부 상	비 고
39	33	4	2	

☐ 건축물 피해

(단위 : 동)

계	유 실	전 파	반 파	침 수	비 고
7,361	18	82	169	7,092	

☐ 농경지 피해

(단위 : ha)

계	전	답	비 고
590.78	69.68	521.10	

☐ 가축 피해

(단위 : 두, 수)

계	소	돼지	닭	기타
281,015	148	8,801	260,793	11,273

☐ 축사 피해

(단위 : 동)

☐ 비닐하우스 피해

(단위 : ha)

계	축 사	비 고	계	비닐하우스	비 고
37	37		23	23	

☐ 어선 피해

(단위 : 척)

☐ 어망·어구 피해

(단위 : 통)

계	어 선	비 고	계	어망·어구	비 고
5	5		786	786	

☐ 자동차·건설기계 피해

(단위 : 대)

계	자 동 차				건 설 기 계			
	유실	침수	파손	기타	유실	침수	파손	기타

※ '98. 8. 18일현재

시세 과세면제 대상

('98. 8. 18일현재)

구분	계	침수	매물	유실	전파	반파	폐사	기타
계		7,092		4,715	82	169	276,318	
인 명	39							
건축물	7,361	7,092		18	82	169		
농경지	590.78							
가 축	281,015			4,697			276,318	
축 사	37							
비닐하우스	23							
어선·어망	786							
자 동 차								
건설기계								

(단위 : 농경지 : ha, 건축물 : 동, 가축 : 두수, 축사 : 동, 비닐하우스 : ha, 어선·어망 : 동)